도난보험 상품요약서

1. 보험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1) 가재일체 등을 포함한 주택 내 동산의 소유자

(단, 증서, 장부, 인장, 훈장, 면허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과 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원고,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등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순수보장성상품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2) 순수보장성상품으로 연간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기간 : 1년

4)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1) 보험에 가입한 동산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

나. 보험금 지급금액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X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예시

주택 내 동산 1억원을 1년동안 가입시 연간보험료 20,000원

4. 보험료 산출기초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그 밖의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